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제15호

2018. 3. 13.

건 명	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(100세행복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3. 6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3. 6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참여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□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 등 총칙(안 제1조 ~ 제5조)

나. 고령친화도시 조성(안 제6조 ~ 제20조)

-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인식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참여, 협력

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(안 제21조 ~ 제24조)

- 도시계획, 교통, 의료, 노인복지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

라.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안 제25조 ~제34조)

-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 수립 시행, 연구,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,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, 나이가 들어도 불편함 없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사회·경제적 참여 속에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산시를 '고령친화도시'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,

○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, 건강, 주거, 교통, 사회참여,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친화 조성을 통해 모든 세대가 통합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제16호

2018. 3. 13.

건 명	논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(100세행복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3. 6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3. 6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학령기 사회적 및 경제적 이유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인구 등 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약 29,000여명으로 추정

○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성인문해교육의 대상(안 제3조)

- 문해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(국적불문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)

나.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(안 제4조)

- 삶의 질 향상 및 사회·문화적 기초생활능력 보장을 위한 교육 지향
-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향
- 교육대상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및 보장

다.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(안 제5조)

-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,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등

라. 경비보조 및 지원(안 제7조)

- 성인문해기관의 경비 및 성인문해교육 인식 전환을 위한 각종 학술활동 지원
-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작품전시, 문화행사 및 기타 필요한 사업 등 지원

마.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활성화 지원(안 제9조)

-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 지원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사회적·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과 논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

○ 비문해·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기초적인 문해력 향상,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과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